

법헌학사 이용내규

 생활관 내규 다운로드

제1장 총칙

[제1조 (목적)]

법헌학사 이용내규는 법헌학사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, 자유와 규율이 조화되는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헌학사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입사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2조 (이용)]

- 법헌학사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.
- 법헌학사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.

[제3조 (출입시간)]

- 출입 제한시간 없음

제2장 입사

[제4조 (입사자격)]

-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.

- ▶ 일반 대학원 및 법학전문 대학원 재학생
- ▶ 기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▶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▶ 법정전열병 질환자로서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한 자
- ▶ 유학자, 퇴학 및 재적자
- ▶ 법헌학사에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
- ▶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

[제5조 (입사선발)]

- 법헌학사의 입사선발은 다음과 같이 경기, 중간입사 선발이 있다.

- ▶ 경기입사선발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.
- ▶ 중간입사선발은 졸업, 휴학 및 미등록으로 발생된 결원을 2학기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.

매 학기의 결원과 보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 입사선발 기준에 따라 입사자를 선발한다.

[제6조 (입사서류)]

- 법헌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입사원서 등의 서류를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.

- ▶ 입사신청서(인터넷으로 입력)
- ▶ 부모 및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1부 (해외거주자인 경우는 가족의 해외 거주 증명서 1부)
- ▶ 복학생의 경우 복학생 서약서(소정양식) 1부

[제7조 (입사등록)]

- 입사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▶ 입사서약서(소정양식) 1부
- ▶ 건강검진(흉부 X선) 결과서 1부

[제8조 (입사허가기간)]

- 경기입사의 허가기간은 1년(개학 일로부터 당해 연도 학사일정 종료일 까지)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학기에 입사한 사생의 2학기 연장은 법헌학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만 하며 미납 시에는 2학기 연장은 취소된다.
- 2학기 중간입사의 허가기간은 당해 연도 학기 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.

[제9조 (기숙사 방배경)]

- 기숙사의 방배경은 법헌학사 배정원칙에 의거 컴퓨터 추천으로 배정한다. 기간 내 미추첨자 및 중간 입사자는 법헌학사에서 배정한다.
-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법헌학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제3장 입사자의 권리·의무와 책임

[제10조 (사생증과 출입증)]

- 입사자 허가된 입사자는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 받는다.
- 입사자는 전항의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 1매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, 재발급 3회 이상 시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.
- 사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.

[제11조 (외박신고)]

- 입사자의 외박은 다음과 같이 단기외박과 경기외박이 있다.

- ▶ 단기외박 : 공휴일을 포함한 8일 미만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
- ▶ 경기외박 : 공휴일을 포함한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외박하는 경우

-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실에 비치된 외박 대장을 사전에 작성한다.
- 외박 대장 미작성자가 외박을 한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간주되며 벌점을 부과한다.
- 외박으로 인한 입주자의 납부금은 감면되지 아니한다.

[제12조 (납부금)]

- 입사자의 관리비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 한다.
- 납부금 미납자는 입사를 취소한다.
- 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서 1일전까지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,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.
- 단, 13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
- 단, 근 입대 또는 질병(의사진단서 첨부)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개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서로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%를 환불한다.
- 단, 13주차 이후 강제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,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.

[제13조 (식당이용)]

- 식사는 자율 배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식점은 매장에서 구입한다.
- 입사자는 식사 시 사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- 입사자는 식당 이용 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
[제14조 (법헌학사내 금지사항)]

- 입사자는 사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▶ 음주 · 도박 · 폭행 행위
- ▶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- ▶ 각종 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▶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
- ▶ 시설물에 낙서를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허가 없이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
- ▶ 공공이용물(예: 청소기, 갑, 다리미, 장기간행물 등)을 무단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- ▶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
- ▶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
- ▶ 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
- ▶ 사내에서 광고를 무단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
- ▶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
- ▶ 외부인을 허가 없이 사생실로 대동하는 행위
- ▶ 사내에서 애완동물들 사육하는 행위
- ▶ 방 안에서 취사를 하거나 식사는 행위
- ▶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[제15조 (점검의무)]

- 생활관장은 시간당 이외에 전조의 금지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를 위촉할 수 있다.
- 전항의 점검담당자와 시간당이 기숙사의 방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전 항의 점검담당자는 긴급한 시설점검, 화재, 안전사고, 보안 및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생이 재시하지 않더라도 방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.

[제16조 (살미변상의무)]

- 법헌학사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생활관장이 정하는 심비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[제17조 (화기단속과 청소 등)]

- 입사자는 자기 방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의 정리 · 정돈과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입사자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
[제18조 (전열기의 사용)]

- 전열기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- ▶ TV, 소형 라디오, 카세트, 전기면도기, 헤어드라이기는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.
- ▶ 개인용 컴퓨터는 개인 방 또는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.
- ▶ 다리미는 사내의 세탁실에서만 사용한다.

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, 생활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

[제19조 (귀중품)]

- 입사자는 귀중품이나 현금 등 고가품을 방안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, 개인물품의 분실은 법헌학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입사자가 방을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[제20조 (면회)]

- 입사자는 외부인의 면회를 지정된 장소(현관 로비)에서 지정된 시간 (09:00 - 22:00)내에 행하여야 한다.
- 면회자는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면회자의 명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4장 벌점

[제21조 (벌점부과)]

- 벌점은 벌지의 <벌점 기준표>에 의하여 부과한다.
- 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4학기동안 유효하며, 이후 기숙사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 [23쪽 벌점 기준표 참조]

[제22조 (상징부과)]

- 상징은 벌지의 <상징 기준표>에 의하여 부과한다.
-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징을 받은 만큼 벌점을 감할 수 있다. 다만,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제23조 (계 제)]

-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.

- ▶ 경고처분 :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
- ▶ 퇴사처분 : <벌점 기준표>에 제시된 퇴사행위에 해당되거나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

[벌점기준표]		
번호	내용	벌점
1	기숙사내에서 폭행, 절도 등 형사상 범법행위	퇴사
2	대리입사자 및 계약자, 무단 입사(숙박)자 및 계약자	퇴사
3	여학생이 남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/ 남학생이 여학생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	퇴사
4	기숙사내에 인화물질, 위험물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	퇴사
5	기숙사내에서 음주(술행 반입포함), 흡연(호실내 풍초 발견포함) 도박행위	퇴사
6	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 방으로 대동하는 행위	퇴사
7	학생증 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	5점
8	전열 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	5점
9	기숙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(호실내 풍초 발견시 동일 적용)	5점
10	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	5점
11	각 사생동의 경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	5점
12	기숙사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안의 시설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	4점
13	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	3점
14	기숙사 내 · 외에서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	3~5점
15	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	2점
16	출입시간을 위반한 행위	2점
17	경기 무단 외박자	2점
18	낙서, 허가받지 않은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	2점
19	기숙사 방 안에서 식사하는 행위	2점
20	기숙사내에서 애완동물들 반입 및 사육하는 행위	2점
21	기숙사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	2점
22	그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	1점~퇴사

[상징기준표]		
번호	내용	상징
1	화강실 청소(1일 2시간)	0.5점
2	컴퓨터실, 휴게실, 독서실 등 공동공간 청소(1일 2시간)	0.5점
3	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활동 한 이(1일 2회)	1점
4	생활관 사무실 근로활동을 한 이(1일 3시간 주 3회)	1점
5	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(각종 선행활동, 봉사활동)	0.5~2점

제5장 퇴사

[제24조 (강제퇴사처분)]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입사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.

- ▶ 학교 등록 미필자
- ▶ 기숙사 납부금을 미납했거나 체납한 자
- ▶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.5/4.0 또는 2.7/4.3 미만인 자
- ▶ 학칙 및 법헌학사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
- ▶ 법헌학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▶ 제7조에 의한 입사등록을 미필한 자
- ▶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

전항의 퇴사처분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

- 제1항의 퇴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진술기회를 부여한다.
- 제1항의 퇴사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- 제1항의 4, 5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활관장은 해당대학에 강제퇴사처분 내용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4조에 의하여 강제퇴사처분 처분 받은 학생은 이후 기숙사 입사가 불가하다.

[제25조 (자진퇴사)]

- 법헌학사를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휴일을 포함한 10일전까지 퇴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헌학사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입사 중 휴학자 및 재적자 등 학적이 변동된 자는 10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.

- 생활관장은 전항의 자진퇴사신고를 수리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한다.

[제26조 (퇴사결차)]

-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.
- 자진퇴사를 신고한 자는 퇴사신고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신청 퇴사일에 퇴사하여야 한다.

제1항 및 제2항의 퇴사자는 퇴사 시 사생증 또는 출입증의 반환 등 퇴사에 따르는 사무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 칙

[이 내규는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]